

<p>제2021-47호 2021년 3월 12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112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113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21-114호 지방하천 점용허가(기간연장) 고시 9
- 여수시 고시 제2021-1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1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65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1-67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1-743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화양면 산 185-4, 화동리 산 27) 14
- 여수시 공고 제2021-746호 2021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홍보 15

기 타

회 람								
--------	--	--	--	--	--	--	--	--

여수 도시관리계획(2012여수세계박람회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3. 12.

여 수 시 장

- 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교통시설(변경)
 -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4	5,748	20,529.9 (174,328.9)	1	55	546.2 (546.2)	1	356	5,483.6 (5,483.6)	2	5,337	14,500.1 (146,779.1)
	대로	2	5,337	14,500.1 (168,299.1)	-	-	-	-	-	-	2	5,337	14,500.1 (146,779.1) ^{주1}
	중로	1	356	5,483.6 (5,483.6)	-	-	-	1	356	5,483.6 (5,483.6)	-	-	-
	소로	1	55	546.2 (546.2)	1	-	546.2 (546.2)	-	-	-	-	-	-
변경	합계	4	5,748	20,719.9 (152,998.9)	1	55	546.2 (546.2)	1	356	5,483.6 (5,483.6)	2	5,337	14,690.1 (146,969.1)
	대로	2	5,337	14,690.1 (146,969.1)	-	-	-	-	-	-	2	5,337	14,690.1 (146,969.1) ^{주2}
	중로	1	356	5,483.6 (5,483.6)	-	-	-	1	356	5,483.6 (5,483.6)	-	-	-
	소로	1	55	546.2 (546.2)	1	-	546.2 (546.2)	-	-	-	-	-	-

주) 면적 ()은 도로의 총 면적임

주1) 대로3- 1호 총면적 138,234.8㎡(구역내: 10,898.8㎡, 구역외: 127,336㎡), 광장 중복결정 면적 8,395.4㎡ 포함
 대로3-36호 총면적 8,544.3㎡(구역내: 3,601.3㎡, 구역외: 4,943㎡)

주2) 대로3- 1호 총면적 138,424.8㎡(구역내: 11,088.8㎡, 구역외: 127,336㎡), 광장 중복결정 면적 8,395.4㎡ 포함
 대로3-36호 총면적 8,544.3㎡(구역내: 3,601.3㎡, 구역외: 4,94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1	17~45	주간선	5,000	2호광장 중앙동 714대	대3-4 만덕동 337-1잡	일반 도로	여수역	국고171호 (76.4.25)	
변경	대로	3	1	17~45	주간선	5,000	2호광장 중앙동 714대	대3-4 만덕동 337-1잡	일반 도로	여수역	국고171호 (76.4.25)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36	25.5	보조 간선	337	덕충동 61-94철	덕충동 66-1대 (기업관)	일반 도로	KTX역	국고1060호 (09.11.10)	
기정	중로	2	117	15	국지	356	덕충동 66-1대 (기업관)	덕충동 66-1대 (여객선터미널)	일반 도로		국고1060호 (09.11.10)	
기정	소로	1	1000	10	국지	55	수정동 337-1도	수정동 338-1도	일반 도로		국고1060호 (09.11.1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	대로3-1	• 선형 및 면적변경 -면적: 10,898.8㎡ → 11,088.8㎡ (증 190㎡)	• 국도17호선(대로3-1호선) 만덕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 도로변경 외에는 교통시설 변경사항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공공공지	덕충동 2016 공	8,487.2 (8,880.2) ^{주1}	감) 190.0	8,297.2 (8,690.2) ^{주2}	국고1060호 (09.11.10)	

주) 면적 ()은 시설 전체의 면적임

주1) 여수엑스포역 진입부 공공공지로서, 총면적 8,880.2㎡(구역내: 8,487.2㎡, 구역외: 393㎡)

주2) 여수엑스포역 진입부 공공공지로서, 총면적 8,690.2㎡(구역내: 8,297.2㎡, 구역외: 39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 변경 -면적: 8,487.2㎡ → 8,297.2㎡ (감 190.0㎡)	• 국도17호선(대로3-1호선) 만덕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공공공지 일부 변경

※ 공공공지 외에는 공간시설 변경사항 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면(변경): 게재생략

4.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2012여수세계박람회 중사지속박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3. 12.

여 수 시 장

- 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교통시설(변경)
 -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9	3,821	53,445.7	4	494	8,383.7	22	3,096	40,933.3	3	231	4,128.7
	대로	1	123	3,442.6	-	-	-	-	-	-	1	123	3,442.6
	중로	5	1,958	35,363.4	2	299	6,255.3	3	1,659	29,108.1	-	-	-
	소로	23	1,740	14,639.7	2	195	2,128.4	19	1,437	11,825.2	2	108	686.1
변경	합계	29	3,821	53,657.7	4	494	8,383.7	22	3,096	40,933.3	3	231	4,340.7
	대로	1	123	3,654.6	-	-	-	-	-	-	1	123	3,654.6
	중로	5	1,958	35,363.4	2	299	6,255.3	3	1,659	29,108.1	-	-	-
	소로	23	1,740	14,639.7	2	195	2,128.4	19	1,437	11,825.2	2	108	686.1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39	25	보조간선 도로	123	덕충동 345-9	덕충동 48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변경	대로	3	39	25	보조간선 도로	123	덕충동 345-9	덕충동 485-3	일반 도로	-	국고10-182 (10.4.6)	선형 변경

※ 그 외 도로시설 변경사항 없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39	대로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및 면적변경 -면적: 3,442.6㎡ → 3,654.6㎡ (증 2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17호선(대로3-1호선) 만덕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 도로시설 외 교통시설 변경사항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공공공지	여수시 덕충동 2075공	7,415.6	감) 212.0	7,203.6	국고10-182 (10.4.6)	자연녹지 지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면적: 7,415.6㎡ → 7,203.6㎡ (감 2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도17호선(대로3-1호선) 만덕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반영에 따른 공공공지 일부 변경

※ 공공공지 외에는 공간시설 변경사항 없음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도면(변경): 게재생략

4.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2.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0-9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51-23	20210312	20091013	옛이름인 강남구미를 근거로 하여 지역명을 강남으로 변경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대동로 70 (화정동)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동 846-6	전라남도 여수시 대동로 70 (화정동)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283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130-57 (선원동)	20210312	20091013	구간통합 (장성포로 일부, 무선로 통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지동 1362, 21-13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3로 135 (화지동)	20210312	20091013	국가산단인 여수산단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1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30-13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 424-6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3길 45 (봉계동)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04-59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35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동 325	전라남도 여수시 조은길 19 (화정동)	202103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마리 445-7, 445-5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화백해안길 79	20210312	20080911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지방하천 점용허가(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 허가(기간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여 수 시 장

□ 허가(기간연장)내역

허가번호		2016-3
하천의 명칭		남수천
점용자	주 소	여수시 산단중앙로 1**
	성 명	(주)한*에너지
점용지역	위 치	여수시 화치동 1371번지
	면 적	92.4㎡
점용목적		파이프 랙 배관설치
점용기간	당 초	2016. 3. 10. ~ 2021. 3. 10.
	변 경	2016. 3. 10. ~ 2025. 12. 31.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허가받은 자		변경사항(허가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16-007 (2021.3.12.)	여수시 웅천동 1892-1번지 지선 공유수면	287㎡	해양레저사업 레저활동 및 일반조종요트면 허시험장, 면제교육장을 위한 접안시설설치, 부유식스파브이 설치	여수시 신월로 284-**	주여수웅천마린아카 데미 (사)대한수상안전교 육협회전남동부지부 1	2016. 3. 14. ~ 2021. 3. 13.	2021. 3. 14. ~ 2026. 3. 13.

2021. 3. 12.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2020년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 업체 아래 참조
2. 공고 기간: 2021. 3. 12. ~ 2021. 3. 26.(15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자본금 미달** 업체는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여수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기술인력 미달** 업체는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일 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기술인력 채용)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처분(영지)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주)승진유공압 (김*국)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여수2015-07-01)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미달		
에스제이플랜트 (이*식)	기계설비공사업 (무안제09-10-01)	영업정지6개월 (2021. 3. 12.~ 2021. 9.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기술인력)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2021.3.12.
범우플랜트(주) (김*호)	도장공사업 (여수2015-05-04)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0-10-13)	등록말소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2 및 시행령 제13조	2021.3.12.
(주)더원에스티 (김*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여수2018-06-02)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미달		
주식회사 나경 (박*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여수2018-07-01)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미달		
(유)다운산업 (김*능)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8-10-05)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주)월드엔지니어링 (박*형)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8-10-01)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2021.3.12.
(주)하나이엔씨 (이*훈)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6-10-04)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초원건설(주) (박*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여수2003-08-05)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2020년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및 제3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나 영업정지 업종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여 수 시 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업종변경 현황

상 호 (대표자)	영업정지 변경 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당 초	변경			
(주)하나이엔씨 (이*훈)	기계설비공사업 (여수2016-10-04)	도장공사업 (여수2014-06-02)	영업정지5개월 (2021. 3. 12. ~ 2021. 8. 1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 0조,제83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2. 변경사유 : (주)하나이엔씨 업체에서 해당업종 변경 요구

3. 처분일자 : 2021.3.12.

4. 공고 기간: 2021. 3. 12. ~ 2021. 3. 26.(15일간)

5.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185-4, 화동리 산27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 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85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185-4	91	6	692		
	화동리 산27	26	6	160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2.

여 수 시 장

2021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지원으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1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선도산단 및 타 지역의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 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산단대개조 지역별 21억원 내외 (국비 14.9, 지방비 6.5)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2년 이내	기술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방식	지정공모 (상세내용 내 지역별 RFP 참조)	신청접수	'21.3.25. 18:00까지
지원한도	연 1~7억원 내외 (컨소시엄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 시 연 10억원 내외 지원 가능)	평가선정	'21.3월 ~4월

-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북구혁신경제벨트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울촌1(일), 광양항 항만부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약 107억원 (국비 74.98억, 지방비 32.5억) *지역별 및 상세금액은 지역별 지원계획 및 RFP 참조
지원기간	최대 21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추진방식	산-산 컨소시엄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2 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고용의무조건>

-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구분	1차년(2021)		2차년(2022)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지원액	7억	7억	7억	14억
신규채용 (2억원당 1명)	3명	3명	2명	5명
청년채용 (5억원당 1명)	1명	1명	1명	2명

※ 참고

-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①에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 및 거점·연계 산업단지

지역	대상지	
	거점	연계단지·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북구혁신경제벨트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 경자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율촌1(일), 광양항 항만부지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①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공장^②, 연구소^③)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①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②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역별 RFP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지역	산업	RFP
경북	전기·자율차	①20분 이내 급속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열관리시스템 적용 10kWh급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
		②10분내 7kWh 충전 가능한 전기차용 긴급 출동 이동식 급속 충전 스테이션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③573K 이상의 내산화성을 가지는 연료전지용 카본 유사 SiC 소재 기반 공정 기술개발
광주	전기·자율차	①소형 SUV 전기차용 고안전 경량 냉각수 패드 일체형 배터리 케이스 개발
		②70kW급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용 냉각 시스템 개발
		③상용 특장차 자율주행용 1550nm SPAD 기반 LiDAR 및 인공지능 인지시스템 개발
대구	전기·자율차	①멀티-센서 융합기반의 통합형 Hypervisor를 활용한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②전기차 800V급 고전압 시스템용 전원분배모듈 및 통합형 전력제어장치 개발
		③전기차용 배터리팩 열관리를 위한 고효율, 고신뢰성을 갖는 전동 6kW급 컴프레셔 구동모듈 개발
		④소형 버스급 상용 전기차용 ESC/EPB 통합시스템 개발
인천	항공	①100kW급 PAV용 엔진 기반 초경량 발전기술 개발
	바이오	②초경량 전력시스템 적용 PAV 실증 기술 개발
		③지역 특화자원 유래 탈모증상완화 비고시 기능성원료 및 제품개발
전남	이차전지	①Black Powder로부터 금속추출 공정이 없는 단순화된 전구체 제조공정 기술개발 ②액상형 재활용 황산 금속(Ni, Co, Mn) 소재를 이용한 Ni90% 이상 저단가 고용량 (>215mAh/g) 하이니켈 NCM 양극재 개발

5 지원규모 : 107.48억원(국비 74.98억, 지방비 32.5억)

○ 지역별 지원 규모 : 21.49억원(국비14.99억, 지방비 6.5억)

(단위: 백만원)

지역	지원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경북	1,499.6	650
광주	1,499.6	650
대구	1,499.6	650
인천	1,499.6	650
전남	1,499.6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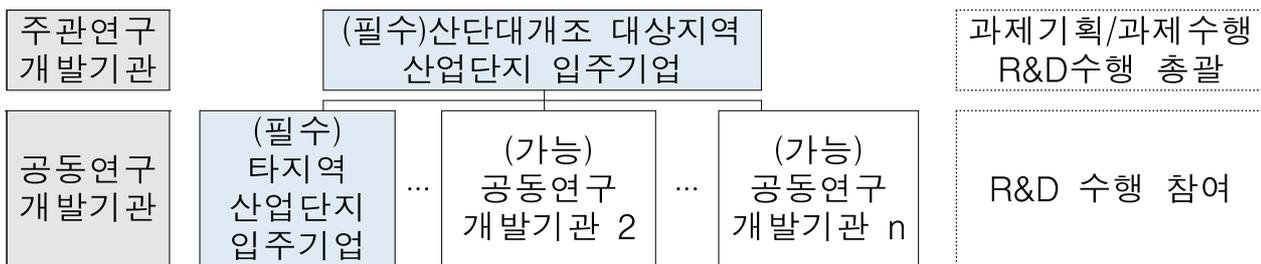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 ~ 7억원 내외

(컨소시엄 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참여시 연 10억원 내외 지원가능)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6 추진 체계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7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내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 2020-233호(2020.12.30))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의 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
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9 성과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
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
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성과확산 관련

-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집적지 내 성과확산을 위해 전
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이 요구됨*
 - * 산업부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1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개발 계획 (30)	기술개발의 필요성(10)	○ 개발대상 기술 및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5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 추진체계 (25)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5
	연계협력의 구체성(10)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20)	○ 수요기반의 사업화 및 수출전략의 구체성	15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5
	고용효과(5)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	5
		지역경제 기여도(15)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 수입대체효과, 지역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	5		
사업비 (5)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5
합계			100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에 해당하

는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 12. 30.))

- 사업비 편성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 [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가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중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
	3.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2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②비영리 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해당 전담기관의 관련 공문 제출)	+3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3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7.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9. 컨소시엄 구성 내 수요기업* 포함 및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9의2	+2
감점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④ 동시수행 과제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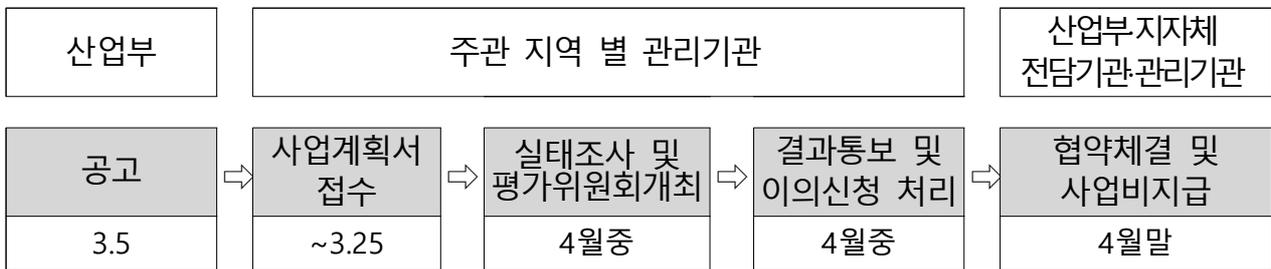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

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 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17.))」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⑥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4 절차 및 일정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관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1. 3. 5(금) 09:00 ~ '21. 3. 25. (목) 18:00까지
- 오프라인 접수기간 : '21. 3. 5(금) 09:00 ~ '21. 3. 25. (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번호 부여)하지 않은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접수 불가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90, 4378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에 제출
 -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규정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및 문의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경북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3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7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1003호)	053-818-9585
인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02-6009-3765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061-339-9721

②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5)

8

사업설명회

□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설명회 제한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1.3.12(금), 18시까지 [붙임3]에 있는 양식 송부 필요

* 메일주소 : youngjun90@kiat.or.kr

- 기타사항 : 세부일시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및 K-PASS 시스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하위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국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	인건비계상율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제출서류 안내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시 제출 서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NO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제출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원본 1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양식1)	각 1부	기관별 1부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양식2)	각 1부	기관별 1부
5		정부과제 참여현황 확인서(양식3)	각 1부	기관별 1부
6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양식4) * 우대사항 증빙 서류 제출	1부	-
7				
8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9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1부	기업만 제출
10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업만 제출
16	해당시	신규참여연구자 채용(예정)확인서(양식5)	1부	해당시 제출
17	제출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6)	1부	해당시 제출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동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연구개발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원본 1부를 집계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 하단 참고) 또는 박스형 안내문은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삭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PDF 및 한글파일을 알집으로 묶어 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① R&D 관련 매출(수출)액

- (R&D 관련 매출(수출)액의 정의)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 산정방법
 - ▶ R&D 관련 매출액 = $\sum(\text{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times \text{기술기여도})$
 - *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부가세납입·수출실적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매출발생 기업 대표가 R&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② 고용 창출

- (고용창출의 정의)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 (산정방법) R&D 과제 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 신규 기타(마케팅 등) 인력을 포함
 - ▶ 고용창출 : $\sum(\text{신규 연구개발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참여율)}) + \sum(\text{신규 생산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 + \sum(\text{신규 기타 인력} \times \text{기술기여도})$
 -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증빙방법) 인사일과 현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고용창출기업 대표가 R&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연구개발비 중복 부정확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동의

동의하지 않음

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지역: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기재합니다.
10. 주력산업명: 본 양식 내 [별표1]의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를 기재 (ex. 정밀의료)
 ※ 해당하는 주력산업이 없을시 "기타"로 기재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산업기술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 신규인력 의무채용: 본 사업은 국비(지방비) 2억원당 신규 인력 1명 의무 채용
 ※ 국비(지방비) 1.5억원(2억원 이하) → 1명 의무채용 / 국비(지방비) 2.5억원(2억원 초과) → 2명 의무채용
22. 고용창출: '고용창출형' 과제지원이므로 해당 과제에서 총 수행기간 채용예정인원 기재

※ 채용 예정인원 = (협약서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및 신규인력 채용확인서 = 기대효과 고용효과 인원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내역사업명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1. 4. 1 - 2022. 12. 31 (21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종료시점 목표()	
연구개발과제 유형	지정공모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기술개발목표	평가지표(항목)	단위	전체항목에서 차 지하는 비중(%)	현재 기술수준	개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화매출액						
	지적재산권						
	신규채용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기관	기술 기여도	산정근거
		%	○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6.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7.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9.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0.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1.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3. 기술개발목표: 각 평가지표별 세부 목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4. 성과지표: 사업화매출액, 지적재산권, 신규채용 등 성과지표 목표치와 산출근거를 기재합니다.
15.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본 양식 앞 부분의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1. 기술개발 개요

- 1-1. 기술개발의 정의
- 1-2.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3. 사업추진 체계

- 3-1. 기술개발 컨소시엄
- 3-2. 연구자원 현황

4. 제품개발 계획 및 추진전략

- 4-1. 최종목표
- 4-2.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4-3. 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

5.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5-1. 사업화 전략
- 5-2. 기대효과

6. 연구개발비

- 5-1. 총 연구개발비
- 5-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5-3. 정부지원&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분담 내역 ...

7. 연구개발기관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1. 기술개발 개요

1-1. 기술개발의 정의

- ☞ 개발 품목.제품 대상에 대한 정의와 내용 설명
- 개발 품목.제품의 용도, 적용분야 등 구체적으로 서술
- 기존 품목.제품(기술)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제시

1-2. 기술개발의 필요성

1-2-1. 개발제품의 국·내외 시장분석

-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동향, 시장규모 등 기재(시장규모 등 산출 시 근거제시)

1-2-1. 개발제품 관련 선행특허 분석

- ☞ 개발 기술/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및 지식재산권 등 현황
- * 향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협약시까지 “선행특허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함.

1-2-1. 기술적 파급효과

- ☞ 개발 대상 제품의 기술적, 산업적, 환경적, 정책적, 지역적 특성을 서술

- 기술적 특성: 지역의 해당분야 기술수준 및 동향분석에 따른 사업 중요성 제시
- 산업적 특성: 해당 산업의 현황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른 사업 중요성 제시
- 환경적 특성: 지역 내 환경(제도 등)에 따른 사업 중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지역전략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업 중요성 제시
- 지역적 특성: 해당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기술의 중요성 제시

1-2-2. 혁신성과 차별성

- ☞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연구내용 및 범위 차별성을 기술

작성 Point

- 개발제품이 사업성을 토대로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는가?
- 개발제품이 기술성, 혁신성, 차별성이 뛰어난가?

2.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2-1. 기술개발 경험

2-1-1. 기술개발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사업화, 특허 실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산업통상자 원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천원)	부처	참여 형태	비고
		'00.00~ '00.00		예)산업통상자 원부	주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과제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천원)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00.00~ '00.00		%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

기관명	개발제품명	제품설명	매출액(천원)		수출액(천원)		비고
			20년	20년	20년	20년	

※ 기관별로 최근 5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특허 출원/등록 실적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기관명	특허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본 과제와 관련정도	비고
		(출원) '00.00.00 (등록) '00.00.00	(출원) (등록)	%	
요약					

※ 기관별로 최근부터 5년간 특허실적 모두 기재

2-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2-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부자원 활용 노력,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선행특허조
 사 등

2-2-1. 사전준비 경과

※ 연구개발기관 간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 개요 : 특허현황 조사 · 주체 : 용역/특허정보연구원 · 목적 : · 성과요약 :

2-2-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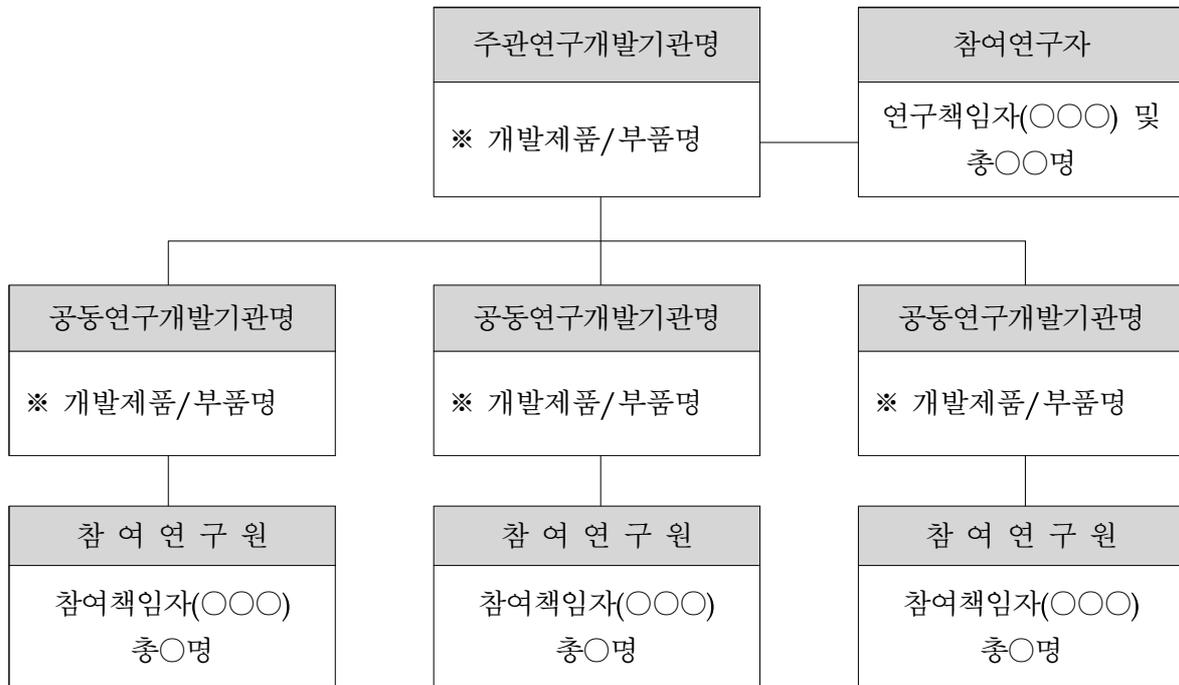
※ 시장조사, 고객니즈 파악 현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전문가 Pool이 있는 경우 관련 Pool을 기재하고 활용계획 기재

작성 Point

- 사업기획을 위해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해외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교류 및 협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

3. 사업추진 체계

3-1. 기술개발 컨소시엄



※ 연구개발기관간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	주요 추진 내용
	• • •
	• • •
	• • •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 내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3-2. 연구자원현황

3-2-1. 참여연구자 현황

☞ 여성참여연구자 가점 신청과제는 비고란에 여성참여연구자 수 기재

기관명	책임급 이상	선임급	원급	신규채용	계	비고
합 계						

3-1-2. 연구개발기관명 : ○○○○○○○○(주관 또는 참여)

☞ 연구개발기관은 “3-1-2. 주관연구개발기관”, “3-1-3.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로 작성하며, ‘3-1-2’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7) 참여연구자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1) 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19xx.xx~19xx.xx	※ 대학이상부터 기재		
(최종학위논문명)			

(3) 책임자 경력사항

☞ 최근 경력부터 기재

연 도	기 관 명	직 위	주요업무
19xx.xx~19xx.xx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학술지명	논문명	저자명		국내/국외	게재 년도	SCI 등재여부
		주저자	공동저자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 최근 실적부터 기재

출판사	국내/국외	저서명	출판년도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 최근 실적부터 기재

과제명	연구기간	당시 소속기관	역 할	부처	관리 기관
aaa	'00.00~'00.00	bbb	연구책임자	지식경제부	KIAT

(7)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 연도		총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인건비 계상률)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홍길동					학사	화학	19XX		○					
채용 예정			원급											

※ 동 사업 참여연구자는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신규채용 구분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신규채용은 공고일 전 6개월부터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 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8) 연구지원인력 현황(*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 연도		총 참여 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홍길동					학사	화학	19XX		○				
채용 예정			원급										

※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작성 Point

- 책임자의 전공분야가 과제 내용과 부합하는가?
- 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연구인력 구성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참여연구자별 역할분담내용은 적절하며, 신규채용인원은 적절한가?

3-2-3. 연구시설 및 장비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수 량	용 도	비 고
aaa	20xx.xx	aaa	000천원	3	연구개발용	기관보유
bbb	20xx.xx	bbb	000천원	2	연구개발용	구입예정

-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작성 Point

-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비는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연구개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 구입예정 장비는 본 과제를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4. 제품개발 계획 및 전략

4-1. 최종목표

(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최종목표		•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 기술적 성과 :		
연차 목표	1차년 도			
	2차년 도			
연구개발기관				
추진전략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 ○○○○개발 • ○○○○개발 • •
추진 내용	1차년 도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 ○○○○구현 • ○○○○구현 • •
	2차년 도			

(2) 기술적 성과목표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성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현재 기술수준3)	개발목표치		평가방법4)
				1차년도 (20XX)	2차년도 (20XX)	
1.						
2.						
3.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현재기술수준을 작성하여 개발목표치와 비교가 가능토록 작성

주4)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3) 경제적 성과목표(사업기간 내)

기관명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합 계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매출 (억원)	고용 (명)

-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 ※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ex: 고용, 수출액, 투자, 시작품제작, 특허출원,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등)

작성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기술개발 목표는 도전적·정량적이며 경제적 성과목표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한가? (예) 세계최초, 국내최고 또는 창의적 목표, 기술개발 목표와 현재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술과의 연관성 등 ○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

4-2.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4-2. 1차년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의 양식을 활용하여

'4-3. 2차년도 연차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작성 (2년 과제인 경우)

※ 수행내용을 기관별·담당역할별로 요약하여 설명 (아래 예시 참조)

ex) ○○기업은 ~~~에 장착되는 ~~~와 ~~~ 및 ~~~~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체화한 ~~~~을 설계하고 ○○기업은 구조해석을 통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완성 설계 완성된 ~~~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기업은 ~~~금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벤치마킹을 통해 설계된 제품에 대한 구조해석을 추진 또한, ~~~~공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을 ○○기업이 설계를 수행하며, ○○기업은 ~~~~와 연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을 개발함과 동시에 제조된 ~~~을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 ○○○, ○○○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

4-2-1.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구분	연구개발기관	정량적 달성목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함유량 : 제품 내 ~~~~함유량 ~~~~% 이하 • ~~~ 진공도 : ~~~진공도 00mmhg 이하 • ~~~ 경량화 : 기존 제품 대비 00% 감소

4-2-2. 세부 개발내용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시제품 제작방법(직접제작 또는 외주 등), 시기 등에 대한 계획도 기재요망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 ~~~~~개발

(2) ~~~~~개발

(3) ~~~~~개발

4-2-3.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기술개발 목표에 따른 기관별 기술개발 내용을 기재하고 투입예산 사업비 기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가능

기관명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예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 ○○○○○○○○○○분석 - ○○○○○○○○○○설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임차비 3,000천원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000천원 - ○○○○○○ 7,000천원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000천원 - ○○○○○○ 7,000천원 • 분석비 2회×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4-3 기관 간 연계협력 계획

3-1.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전략

☞ 협력성과 창출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제시

3-2. 협력성과 지표

☞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발생한 공동매출, 기술거래·제휴, 공동특허, 공동투자 등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협력 성과지표 3개 이내 제시

☞ 해당지표를 “협력”성과 지표로 선정할 이유 서술

성과지표	지표정의	측정산식	지표선정 이유
지표 A			
지표 B			
지표 C			

<협력성과 지표(예시)>

성과지표	지표정의	측정산식
지역간 재화/용역 거래증가율	과제 관련 기업간 제품/상품, 서비스 거래 증가율	$\Sigma(\text{연차과제종료 후 2년 이내 거래량}) - \Sigma(\text{과제착수 이전 2년 이내 거래량})$
공동 시설투자	연구개발기관 간 제품양산시설 공동투자	$\Sigma(\text{기술개발 후 시설 투자금액})$
공동특허 출원 실적	공동 특허출원 비율	$\{(\text{공동특허출원 수}) / (\text{전체 특허출원수})\}$
기술거래 실적	연구성과 기술이전 실적	$\Sigma(\text{기술실시계약 건수})$
기술제휴 및 협력건수	기술제휴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실적	$\Sigma(\text{MOU 체결수})$

3-3. 연차별 협력성과 목표

지 표	1차년도	합계	비고
지표 A			
지표 B			
지표 C			

작성 Point

- 연계협력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협력성과 지표가 설정되었는가?
- 협력성과 지표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5.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5-1. 국내외 시장분석

5-1-1. 국내외 시장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 명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6)	

5-1-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단위 : 천원)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5-2.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화 전략 : 본 기술개발 성공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사업화 계획 (5개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년 도		()년 (개발종료 해당년)	()년 (개발종료 후 1년)	()년 (개발종료 후 2년)	()년 (개발종료 후 3년)	()년 (개발종료 후 4년)	()년 (개발종료 후 5년)
사업목표							
사업화 내용							
투 자 계 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 획	매 출 (백만원)						
	수 출 (만불)						

5-2-1.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전략 (실용화/사업화 전략, 시장진입시기, 수출전략)

5-2-2.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 대기업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방안

5-2-3.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인력확보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20xx	20xx	20xx	20xx	자기자금	타인자금
시 설 자 금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소 계)						
운 전 자 금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소 계)						
합 계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 시제품 → 샘플 → 양산체제 구축 → 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사업화를 위한 핵심인력 확보방안

작성 Point

- 국내외 시장분석이 객관적으로 되어있는가?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는가?

5-3. 지역발전효과

5-3-1. 고용 효과

○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설명

<고용목표>

기관명	창출내용	고용목표(명)						
		총 수행기간	종료 1년차	종료 2년차	종료 3년차	종료 4년차	종료 5년차	합계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①							
	②							
	③							
	소계							
합계								

※ 연구개발계획서 상 신규참여인력 + 사업관련 신규채용인력(협약기간 내 채용인력)

5-3-2. 산업생태계 활성화 효과

○ 지역경제 발전 효과 설명

- ※ 해당 지역우수기업과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 제시
- ※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거래업체들과의 동반성장가능성 제시
-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기여가능성 제시
 -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으로 지역경제 생태계 상 중요성을 가짐

작성 Point

- 과제수행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우수하며 실현 가능한가?
- 해당 지역우수기업의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거래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있는가?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 계	연 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 ¹⁾)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6-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6-2-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일반 ³⁾	특례 ⁴⁾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합니다.
-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2-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6-2-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⁵⁾	연구수당 계상 기준 금액 ⁶⁾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비		연구 재료 비	위탁 연구 개발 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비	연구 개발 부담 비	연구 활동 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작성 Point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가?
- 연구개발기관별 예산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연구과제 개발내용과 연구개발비 편성 내용이 일치하는가?

7. 연구개발기관 현황

【작성방법】

-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누어 작성

(비영리기관용)

기관구분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 관	공동연구개발기 관	공동연구개발기 관	공동연구개발기 관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유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시인력					
전년도 매출액 (천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연락 처	전화(HP)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각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반드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락처 등 기재

(영리기관 기업용)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대표자 성명 (국적)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부지(m ²), 건물(m ²)	
	공장	(-)	부지(m ²), 건물(m ²)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E-mail	
기관유형			최대주주 (국적)	
업종			주 생산품목	
실무 담당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	
			E-mail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	주요내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구개발	일반사무	영업	생산	기타	합계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과 목	20xx	20xx	과 목	20xx	20xx
유동자산			1) 총매출액		
1) 당좌자산			2) 총매출원가		
2) 재고자산			매출총이익		
비유동자산			운영비용		
1) 투자자산			1) 판매 및 마케팅		
2) 유형자산			2) 연구개발비		
3) 무형자산			3) 일반관리비		
4) 기타자산			총운영비용		
자산총계			영업이익		
부 채			기타이익		
1) 유동부채			세금		
2) 비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구 분	20xx	20xx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text{부채비율} = (\text{부채총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text{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text{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총계}) \times 100$$

$$\text{자기자본} = \text{자산총계} - \text{부채총계}$$

1-5. 주주구성

성 명	대주주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총 주 식 수	천주
			주당액면금액	원
			지분율	비 고
합 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p><input type="checkbox"/>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p> <p>▶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참여제한 여부</p> <p>▶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증인지 여부</p> <p>▶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th> <th style="width: 35%;">정상기업</th> <th style="width: 35%;">한계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중견기업</td> <td>5</td> <td>4</td> </tr> <tr> <td>중소기업</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p>*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p> <p>▶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p> <p>▶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p>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p><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p> <p>▶ 기업의 부도</p> <p>▶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p> <p>▶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p> <p>▶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p>											

※

<p>▶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p> <p>※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p> <p>※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p>		
<p>▶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p>		
<p>▶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장"인 경우</p>		
<p>▶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p>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인)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지역명						
과제명						
기관명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주민등록 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대표자	000000 -0000000	8자리		
		연구책임자	000000 -0000000			
		참여연구자	000000 -0*****			
		참여연구자	000000 -0*****			
		참여연구자	000000 -0*****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③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리
- ④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사업비 사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관리
- ⑥ 기술료 징수 및 관리
- ⑦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관 식별정보, 고용정보 등

3.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이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제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에 선정될 경우 위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_____ (직인) / (인감)

2021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작성, 대표이사 및 연구책임자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표자 기재 불필요
-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을 기재
-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 제출
- ※ 본 동의서는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하여 기입
-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관명 아래 법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 기입

정부과제 참여현황 확인서			
사업명			
접수번호		산업분야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검토일자	2021. XX. XX..

연구개발 참여도 및 몰입도	준수	위반
· 연구책임자 참여과제수 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참여연구자 참여과제수 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 (기업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원제외 대상 기준 >

연구책임자 참여과제수 기준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지원과제는 3개 이내이며, 위반시 지원제외대상임

참여연구자 참여과제수 기준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참여연구자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정부지원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 (기업만 해당)
- 연구과제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단,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건에 한해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4.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

2021. . .

책임자 _____(인)

[양식 4]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업명			
접수번호			검토(확인)일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KIAT, KEIT, KETEP의 관련 공문 제출 필요)	+3		
	○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등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1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컨소시엄 구성 내 수요기업* 포함 및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9의2	+2		
소 계(A)				
감점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소 계(B)				
합 계(A+B)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신규참여연구자 채용(예정)확인서

사 업 명	(지역)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		
접수번호			
과 제 명	과제명		
신청기관	(주관) 기업명/(공동)기업명	연구책임자	
기 업 개 요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대() 중견() 중소()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채용담당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채 용 계 획	근무지		
	총 채용인원	명	
	채용분야	연구·개발	사업화·마케팅·기타
	채용인원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정규직 ○명, 계약직 ○명
	채용시기	‘ 년 월(명), ’ 년 월(명)	‘ 년 월(명), ’ 년 월(명)
	자격요건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월급여액	원	
직무내용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수요기업명			
수요기업 (책임자)	OOOO(홍길동), OOOO(이순신)		
과제수행후 예정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단순 참고용임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위의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 사업의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수요기업의 참여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 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주관연구개발기관명)</p>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대표자)</p> <p>_____ (인) _____ (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수요기업명)</p> <p style="color: blue; font-style: italic;">(대표자)</p> <p>_____ (인) _____ (인)</p> </div> </div>			

-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 기업 및 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